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280

발의연월일: 2023. 2. 24.

발 의 자:이해식・서영교・안호영

오영환 · 이형석 · 우원식

김정호 · 김교흥 · 민병덕

박상혁 • 서영석 • 이성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 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4조(국가 등의	책무)	1.2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・②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
			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
			수습 과정에서 재난으로 피해
			를 입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
			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	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